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

제1조 (목적)

본 실천사항은 원사업자(이하 "당사"라 함)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하도급법"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"협력업체"라 함은 당사의 제조·건설·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.
- ② "협력업체 풀(Pool)"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/운용하는 협력 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- ③ "협력업체 선정"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(Pool)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④ "협력업체 운용"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,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 (협력업체 선정・운용 실천사항)

본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,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-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 - 1.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 포함) 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사업장, 전자매체(당사 홈페이지, 이하 같음)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 - 2.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개별 통지한다.
 - 3.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해야 하며, 미선정

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.

②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
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 - 1.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세부 선정 기준 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.
 - 가. 협력업체 선정 시,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(등록) 할 수 있다.
 -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
 -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
 -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
 -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
 - 나. 협력업체 선정 시,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한 선정(등록)으로 볼 수 있다.
 - 퇴직임직원, 학연, 지연,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 준으로 하는 경우
 -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
 -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
 - 2.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.
 - 3.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 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.
 - 4.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 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.
- ④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

협력업체로 선정 ·등록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.

제4조 (신규 거래 등록 기준)

자재의 신규 개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.

- ①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,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
- ② 개발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,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,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
- ③ 물량 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
- ④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
- ⑤ 분사, 합병 등으로 기존 업체가 존재하면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

제5조 (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)

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

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

②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
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 - 1.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.
 - 가.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.
 - 품질 및 납기, 가격,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
 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
 - 공급 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 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 - 부도, 채권압류, 휴업, 만성 노사분규,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 거래 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

- 비밀정보 유출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-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
- 나.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.
 - 원가절감계획,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 -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 -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 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(단,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 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)
 -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 는 경우
- 2.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 (위반행위에 대한 처분)

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
부칙

-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